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조리·시설관리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조리·시설관리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가.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 방법	선발 예정			시험 과목	담당 예정 업무
	구분	계급	인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조리	9급	38	1차: 사회 2차: 위생관계법규	· 급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 및 조리, 배식업무 · 조리실·식당 청소, 소독 등 위생 업무 및 관리 · 급식시설 설비 및 기구 세척, 소독, 안전 업무 · 식품보관실(저장창고) 저장 관리 · 기타 기관장이 사무분장하는 업무
	시설관리	9급	55	1차: 한국사 2차: 사회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목관리 · 시설물 개방, 최종퇴청 보안점검과 건물 폐쇄 방호 · 기관(학교) 환경관리 업무 · 상급(유관)기관 문서수발 · 금융기관거래 업무 · 등사업무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관장이 사무분장하는 업무
합 계			93		

나. 시·군 지역별 구분모집

임용 방법	직 종 (직급)	직 렬 (직 류)	선발 인원	지역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경력경쟁	일반직 (9급)	조리	38	3	1	2	9	8	1	2	0	2	2	2	2	3	1
		시설관리	55	5	4	5	8	3	5	4	2	1	6	3	1	4	4
소 계			93	8	5	7	17	11	6	6	2	3	8	5	3	7	5

- ※ 합격자는 당해 권역에서 5년간 다른 지역 및 타 임용기관으로의 전출 및 전보 제한
- ※ 지역구분 응시 조건은 거주지와는 별개지만 복수 지원은 불가
예) 천안 거주지인 사람 > 공주 응시 가능 단, 천안, 공주 복수 지원 불가

2.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제2차 시험 :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자격요건

▶ 조리 직렬

구분	직렬	자격증	
경력경쟁 임용시험	조리 (9급)	등급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능장	조리기능장
		산업기사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기능사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자격 취득 후 당해 시험 시행 공고일 이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2년 이상 조리관련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함
- ▷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조리업무 경력 2년 산정 기준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주40시간) 이상 정규 근무한 형태를 상근으로 인정(비상근 근무형태인 경우 근무시간을 비례, 합산하여 주40시간을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함)

▶ 시설관리 직렬

구분	직렬	자격증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설관리 (9급)	○ 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관련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관리관련 <u>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u> → 사전 서류 제출 시 경력증명서 제출 ③ 시설관리관련 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④ 시설관리관련 분야 <u>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 → 사전 서류 제출 시 경력증명서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전기, 기계정비, 조경

-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공고일 이전까지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기업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 시설관리 관련분야 경력은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시설관리업무 경력 2년 산정 기준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주40시간) 이상 정규 근무한 형태를 상근으로 인정(비상근 근무형태인 경우 근무시간을 비례, 합산하여 주40시간을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함)

다. 서류전형 제출 서류

▶ 조리 직렬

- ① **경력증명서 1부** (붙임2「서식 1-1」사용)
 -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서 발행한 2년 이상 조리업무 근무경력
 - 조리업무 근무경력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작성
 - 경력 기간 : 시험 시행 공고일까지의 이전 경력
- ②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사본(위탁의 경우는 위탁급식업 신고증 사본도 포함) 1부**
 - 앞면(신고사항)과 뒷면(변동사항)을 모두 복사
- ③ **조리직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사본 1부**
- ④ **근무사실확인서 1부** (붙임2「서식 1-2」사용)
 - 경력 기간 : 시험시행 공고일 이전 경력
 - ‘위탁급식업체’ 등 근무로 경력증명서의 소속회사명과 실제근무지가 다른 경우에 제출함
(해당사항 없는 사람은 제출 생략)
-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등록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다만, 개인 사정 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확인서 제출 가능
- ⑥ **가산 특전 증빙서류 1부(해당자만 제출)**
- ⑦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이전주소 포함된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원본 제출(흑백 출력본 제출 가능함, 복사본 불가함)
- ⑧ **응시표 작성을 위한 여권사진(3.5cm x 4.5cm) 2부**
 - 서류전형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필기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
- ⑨ **응시수수료 입금 확인서 1부(5,000원)**
 - 응시수수료 이체결과 조회 출력물(입금자, 입금계좌명 등 입금 확인용)

▶ 시설관리 직렬

→ ②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및 ④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아래 ①~⑤까지 모두 제출

* ① 산업기사 이상 자격보유자 및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는 ①~②까지 제출

① 경력증명서 1부 (붙임2「서식 2-1」사용)

- 시설관리분야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입상 이후 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
- 경력 기간 : 시험시행 공고일 이전 경력
- * 자격증 관련분야 근무경력이어야 함
-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이상 정규 근무한 형태를 상시근로로 인정하며, 상시근로가 아닌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기간을 계산함

② 자격증(원본지참) 사본

-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입상실적 증명서 사본(원본지참)
- * 가산 특전 증빙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③ 근무사실확인서 1부 (붙임2「서식 2-2」사용)

- 경력 기간 : 시험시행 공고일 이전 경력
- 경력증명서의 소속회사명과 실제근무지가 다른 경우에 제출함
(해당사항 없는 사람은 제출 생략)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⑤ 가산 특전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⑥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이전주소 포함된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원본 제출(흑백 출력본 제출 가능함, 복사본 불가함)

⑦ 응시표 작성을 위한 여권사진(3.5cm x 4.5cm) 2부

- 서류전형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필기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

⑧ 응시수수료 입금 확인서 1부(5,000원)

- 응시수수료 이체결과 조회 출력물(입금자, 입금계좌명 등 입금 확인용)

※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응시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최종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됩니다.

※ 상기 경력증명서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비상시 근로 등)에는 별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자의적인 해석, 응시자격 요건 미충족,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의 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연령 및 거주지 제한

시험명	응시연령 (생년월일 기준)	거주지 제한
경력경쟁임용시험 (일반직9급)	18세이상 (2003.12.31.이전출생자)	○ 아래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로 되어 있는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등록기준지로는 응시할 수 없음)

* 거주지제한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 충청남도 연기군 3년 이상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편입 : 응시 할 수 없음)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조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마. 성별 : 제한 없음

바.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가.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선택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 시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 합격자는 없습니다.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가산 특전 해당 지역(4명 이상 모집 지역)

- 조리직렬 : 아산, 서산
- 시설관리직렬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당진, 서천, 예산, 태안

3. 시험 일정

원서접수 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
2022.01.05.(수) 09:00 ~ 2022.01.07.(금) 18:00	서류전형	-	-	2022.01.14.(금)
(12:00~13:00 제외, 18:00이후 접수 불가)	필기시험	2022.01.14.(금)	2022.01.29.(토)	2022.02.07.(월)
	면접시험	2022.02.07.(월)	2022.02.14.(월)	2022.02.16.(수)

○ 서류전형 사전 제출 서류

- 가. 접수장소 : 충청남도교육청 민원실(1층)
- 나. 접수기간 : 2022. 01. 05.(수) ~ 01. 07.(금) [3일 간]
- 다.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원칙(부득이 본인이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별지3호] 서식 작성 후 함께 제출)

※ 우편접수 불가

마. 응시원서 및 응시번호 발급 : 직렬별 및 희망지역별로 응시번호 발급

바.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수수료를 아래 계좌에 입금후 입금확인서(금융기관별 이체결과 조회)를 서류전형 사전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계좌번호 : 430-01-000251(금융기관 : 농협, 예금주 : 충남교육청)

※ 입금자명: 응시자 본인 성명(반드시 입금자와 응시자가 일치하여야 함)

구 분	사전서류제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서류 접수 장소
서류전형	2022.01.05.(수) 09:00~ 2022.01.07.(금) 18:00 (12:00~13:00 제외, 18:00이후 접수 불가)	2022.01.14.(금)	충남교육청 민원실(1층)

※ 사전 서류 제출 시 응시표를 함께 발급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만 필기시험 응시 가능

○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가. 시험일시 : 2022.01.29.(토) 10:00 ~ 10:40

※ 추진상황에 따라 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별도 공고 예정

나. 시험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22.01.14.(금) 예정) 시 공개

다.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라.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예정) : 2022.02.07.(월)

마.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중 필기시험 합격자(선발예정인원(지역구분별)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가. 시험일시 : 2022.02.14.(월) 09:00 ~ 16:00

※ 추진상황에 따라 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별도 공고 예정

나. 시험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개

다.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22.02.16.(수)

4. 기타(유의)사항

가.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행정안전부예규),「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에 의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팀)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41) 640-8022

○ 주소 :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남교육청 총무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cne.go.kr>)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원서 접수시 제공되는 용지에 자필 기재 작성함

응시원서

(앞면)

응시표			(사진란)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희망지역	성명	(한글) (한자)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계급(직렬)		2022년 1월 일 충청남도교육청 인사위원회위원장	

주의사항

1. 응시표는 면접시험 시행일까지 소지하여야 하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41-640-8022)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022.1.14.(금)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안내합니다.
(별도 개별연락은 하지 않으며, 자격검증 결과 합격자 확인 시 위 응시번호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접수증			(사진란)
응시수수료 납부 날인			
희망지역	성명	(한글) (한자)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계급(직렬)		2022년 1월 일 충청남도교육청 인사위원회위원장	

보완사항	를(을) 2022. 1. 10.(월) 18:00까지 보완해야 함
------	-------------------------------------

**2022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조리·시설관리직렬) 필기시험 자격검증 서류
접수증 및 응시표**

본인은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조리·시설관리직렬)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필기시험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필기시험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전형 결과는 2022.1.14.(금) 충남교육청 누리집(www.cne.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하며, 서류전형에 합격할 경우에만 필기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3. 서류전형 결과 증빙서 또는 자격증, 경력증명서(근무사실확인서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증명서류의 허위, 오기로 응시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될 수 있으며, 서류전형 불합격자는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조리·시설관리직렬)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필기시험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를 받았을 경우, 보완사항은 2022.1.10.(월) 18:00까지 인편 또는 우편(2022.1.10.까지 소인분 인정)으로 제출 완료할 것을 서약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2022. 1. 10.(월) 18:00까지 보완해야 함
------	-------------------------------------

2022년 1월 일

서류제출자 성명

(서 명)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가.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나.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다.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마.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성 명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자격, 경력 등 자료검증 및 범죄 경력 조회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업무관련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아래사항에 대하여도 본 동의서로 갈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본인의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이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 발휘

2022. . .

동의인 : (서명)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위 임 장

1.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2.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과 관련한 응시원서 및 서류 제출을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자 (서명)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